

기본실무 -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 : 10년의 소멸시효 + 실적보상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 중요



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9다75178 판결

34

1. “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**10년**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,
2.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,
3. **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**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.”

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

35

□ 원칙

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 :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함. 소멸시효는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성

□ 예외 - 실적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

근무규칙 등에서 대가의 지불시기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불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정당한 보상액의 지불을 받을 권리의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보아 그 **지불시기가 정당한 보상액의 지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**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. (서울고등법원 2008나119134 판결 등).

판결 사례

36

(서울고등법원 2008나119134 판결)

직무발명 승계시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 (1996. 10. 1. 시행)

“①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에 의해 회사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장과 지적재산담당 임원의 **심의를 거쳐** 기여실적액의 5%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③ 첫회분은 제품출시년도의 다음 회계 연도 1년 동안의 **실적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.**”(제19조)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,

직무발명보상심의요령(1996. 10. 1.시행)은 “직무발명보상금 지급대상 중 ... **실시 및 처분된 특허는 심의에 의해 지급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한다.**”(제6조)라고 규정...

변호사/변리사, 발명자 중심 보상청구소송, 다수사건 A~Z 수행, 소송비용경감 전략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